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262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3. 09. 11.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 (제출자)	회부일	회의정보	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967	박석 의원	'23.8.21.	상정 · 심사	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('23.9.11.)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973	김태수 의원	'23.8.21.	상정 · 심사	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('23.9.11.)

-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(2023.09.11.)는 위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서울주택도시공사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근거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, 서울주택

도시공사의 근거 법령인 본 조례에는 해당 사업이 빠져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- 특히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은 지방공사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어,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빈집 사업 취득세 감면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- 한편,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분양원가를 비롯하여 자산현황 및 주요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에 따라 안정적·지속적 공개를 위하여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2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함(안 제21조).
- 나. 공사의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분양원가, 자산현황,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의 공개 근거를 규정함(안 제43조의2 신설).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

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투명경영을 위한 공개) ① 공사는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.

1.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
2.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
3.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
4.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 항목, 시기,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20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21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1조(사업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20. (현행과 같음)</p> <p>21. 「<u>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</u>」에 따른 <u>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</u></p> <p>22. (현행 제21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43조의2(투명경영을 위한 공개)</u></p> <p>① <u>공사는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</u></p> <p>2. <u>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</u></p> <p>3. <u>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</u></p> <p>4. <u>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, 시기,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.</u></p>